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21. 4. 15.(목)	담당부서	불공정무역조사과
담당과장	장수철 과장(044-203-5880)	담 당 자	나한균 사무관(044-203-5882)

무역위원회, 「손목시계 상표권 침해」 불공정무역행위 판정

- 제410차 무역위원회 개최('21.4.15.)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**무역위원회**(위원장 장승화)는 **2021. 4. 15.(목) 제410차 회의**를 개최하여 **「손목시계 상표권 침해」** 조사 건을 **의결함**

○ **무역위원회는** 'A社'의 조사대상물품 수입·판매 행위를 **불공정무역행위*로 판정**하고, 'A社'에게 조사대상물품의 **수입 및 판매행위 중지, 재고 폐기처분,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**하였음

* 「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」 제4조(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) 규정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·판매하는 행위(제1항 제1호)

□ 이번 판정에 앞서 스웨덴 소재 시계업체인 **'다니엘웰링턴社'는**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손목시계를 수입·판매한 'A社'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역위원회에 **조사를 신청하였음**

○ 무역위원회는 ‘다니엘웰링턴社’와 ‘A社’를 상대로 약 10개월에 걸쳐 서면 조사, 현지 조사, 외부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였음

○ 조사 결과, ‘A社’가 ‘다니엘웰링턴社’의 **상표권을 침해한 조사대상 물품(손목시계)을 홍콩 등에서 수입하여 자사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**되었음

□ 한편,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“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·상표권,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·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, ‘**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**’를 통해 6~10개월 이내에 **신속히 구제**받을 수 있다며,

○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**‘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’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”고 밝혔음**

*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경우,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가능 (50% 범위내 5,000만원까지, 문의 :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(02-2124-3165))

【붙임】「손목시계 상표권 침해」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나한균 사무관(☎ 044-203-588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**「손목시계 상표권 침해」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**

□ 신청 개요

○ **(신청인)** 다니엘웰링턴社 (스웨덴 소재 시계업체)

○ **(피신청인)** A社 (브랜드 시계 수입·판매 업체)

○ **(조사대상물품)** 손목시계

○ **(신청이유)**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**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조사대상 물품**을 홍콩 등에서 **수입하여 국내 판매**

<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조사대상물품 >

신청인 등록상표	조사대상물품
다니엘 웰링턴 상표등록번호 제40-1385869호 DW Daniel Wellington 국제등록번호 제1260501호 **DANIEL WELLINGTON** 국제등록번호 제1135742호	

□ 조사 결과

○ 피신청인이 상표권을 침해한 '손목시계'를 홍콩 등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**불공정무역행위*가 인정됨**

* 「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」 제4조(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) 규정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·판매하는 행위(제1항 제1호)

□ 판정 결과

○ 피신청인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해당 결정(제410차 무역위, '21.4.15.)

* 제재조치 : 시정명령(수입 및 판매 중지, 재고 폐기 등) 및 과징금 부과 처분